

##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

의안 번호	29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5. 3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#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내 일반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일·숙직수당 책정방법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변경되어 현실에 맞게 당직수당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 주요내용

- 가. 당직수당을 1인 1회당 30,000원으로 함.(안 제3조)
- 나. 당직수당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지급하도록 함.(안 제4조)

### 제정조례안 : 붙임

##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·충청북도교육청 및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과 그 소속기관,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공립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당직수당 지급)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은 1인 1회당 30,000원을 지급한다.

제4조(지급시기) 당직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지급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